

RFP 번호	2026-혁신인재-02	담당	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						
공모 유형	자유공모	보안 분류	일반						
과제명	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-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								
지원 대상	주관기관: ☒산업체 ☒대학 ☒연구소 ☐비영리법인 ☐제한없음 참여기관: ☐산업체 ☐대학 ☐연구소 ☐비영리법인 ☐제한없음 ※ 상세 자격 요건은 해당 공고 참조								
목표	○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산학연이 활용하고 사업관리 및 연구를 지원하는 인재 유치형 R&D 사업								
동향 및 필요성	○(해외인력유치) 우주항공분야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기술발전 고도화 필요성 제기 - (해외사례) JPL은 대학·연구기관과의 상시 협력을 통해 NASA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지식·기술을 외부와 교류하기 위해 방문연구자 제도운영 ○(국가전략 구체화) 선도국들은 우주항공 역량 강화 및 우주경제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가 전략을 수정하고 구체적 투자계획을 발표 ○(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(수정)) 대학·기관에서 필요한 해외 우수과학자 채용을 지원하고 의무복무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 경쟁력 강화 * 해외우수과학자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를 의미								
연구 내용	○(사업내용)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우주항공기관이 활용하고 해외인력들이 사업관리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 ○(신청자격) 우주청 산하 출연연(항우연, 천문연), 우주항공 관련 대학, 기업 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< 신청자격 세부내용 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</td><td>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</td></tr> <tr> <td>대학(원)</td><td>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</td></tr> <tr> <td>기업</td><td>우주항공 관련 제조, 생산,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※ 사업 지원 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예시 :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)</td></tr> </table> ○(활용대상)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			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	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	대학(원)	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	기업	우주항공 관련 제조, 생산,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※ 사업 지원 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예시 :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)
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	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								
대학(원)	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								
기업	우주항공 관련 제조, 생산,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※ 사업 지원 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예시 :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)								

내 정규직 미소속인 우주항공분야 '해외우수과학자'로 국적·연령·전공은 무관

·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②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(단, 국내에서 연구 중으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중인 해외박사는 신청 대상에 포함됨)

※ (불가 대상) 공고일 기준, 국내 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(단,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),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, 기타에 저촉되는 자(☞ RFP 기타 참고)

※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. 단,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(상세사항 문의 필요 ☎ 055) 856-4238 / kasarnd@korea.kr)

○(지원규모) ○명*

* 해외인력별 지원 인원 및 규모는 **인재활용위원회**를 통해 결정 예정(신진연구자~석학급)

○(공모방식) 자유공모

○(지원기간) 최대 30개월(18개월+12개월)*

* 1) '26년도 실근무 개시일~'27년(실근무 개시일은 '26.7월 가정 시 18개월)+

2) 단계평가(지원받은 해외우수과학자의 주요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) 후 '28년 연장지원

※ 30개월 지원을 받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연장을 원할 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

※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(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)의 70% 이상이어야 함

*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과 관련한 평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

기대 효과

○ (경제/사회적 파급효과) 해외 우수인재의 유입을 통해 KASA 산하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

- 우주항공 기술의 핵심 역량 내재화 및 전략분야 선도 기반 구축
- 고립된 분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, 범용 융합형 인재 양성체계 정착

○ (직·간접적 고용, 일자리 창출, 인력양성 파급효과) 해외 인재와 국내 신진연구자 간 협업 모델 형성을 통한 인재 사다리 확보

- 신진연구자들에게 글로벌 멘토링 및 연구 경험 기회 제공

연구 기간

○2026년 ~ 2030년 (1차년도 수행기간: 3개월 이상)

사업공고 (‘26.9~‘26.10)	선정평가 (‘26.10)	인재활용 규모 확정 (‘26.10)	수행관리 (‘26.10.~‘27.12)	성과관리
‘26년 신규과제 사업 공고	⇒ 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확정 (후보군까지 선정)	⇒ 수행기관의 필요인력의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	⇒ 협약 및 사업비 지급	⇒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
우주항공청 (IRIS, 60일 이상)	1개월	1개월	약 3개월	차년도 1월

※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음

지원 예산

○정부출연금 : 5,000백만원 이내

○연도별 지원 규모

구분	합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
비용지원	50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

※ 상기의 정부출연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 비용 지원 항목 및 분류 >

총연구비			
직접비			간접비
인건비 (수정직접비의 70% 이상)	연구활동비	그 외 비목	
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	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해외연구자활용지원원비(연구생활장려금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	인재유치 비용 (유치설명회 부스비용 등)	수정직접비*의 5% 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

* 수정직접비 : 직접비 - 현물 - 위탁연구개발비 - 국제공동연구개발비 - 연구개발부담비

○(간접비)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5% 준용

○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별도 매칭

기타

○혁신법 및 운영 매뉴얼에 의거 사업관리 예정

- 본 공고, 사업,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행정규칙 「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등을 적용

○3책5공 제외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근거)

○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,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
○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게재해야 함

○신청기관·선정기관 등에는 별도 안내 및 자료 배포 예정

“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(R&D)”

사 업 안 내 서

[내역2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]

2026. 9.

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



목 차

I. 사업개요	3
1. 사업개요	3
2. 2026년 추진 일정(안)	3
II. 신청 및 선정	4
1. 신청기간	4
2.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	4
3. 신청자격	5
4. 선정평가	6
III. 연구개발비 지급	8
1. 사업공고 및 산·학·연의 과제 지원	8
2. 예산 지원	9
IV. 사업관리	12
1. 연구 기간	12
2. 성과관리 방안	12
3. 사업추진 프로세스	13
4. 해외 우수과학자 관리	14
5. 기타 및 유의 사항	14

I. 사업개요

- (배경) 우주항공분야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기술발전 고도화 필요성 제기

☞ 선제적으로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

- (주요 추진목적)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우주항공기관이 활용하고 해외인력들이 사업관리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

- (사업기간/예산) '26 ~ '30년 / 10억원('26년)

- (예산규모) 총 50억원

구분	합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
과제	50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

- (지원규모) ○명*

* 해외인력별 지원 인원 및 규모는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(신진연구자~석학급)

- (지원기간) 과제당(인원당) 최대 30개월(18개월+12개월)*

* 1) '26년도 실근무 개시일~'27년(실근무 개시일은 '26.7월 가정 시 18개월)+

2) 단계평가 후 '28년 연장지원

※ 30개월 지원을 받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연장을 원할 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

-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

-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①우주항공 분야로 한정하여 인재를 유치, ②지원분야도 프로젝트가 아닌 인력 채용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우주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였음

- 2026년 추진 일정(안)

일정	추진내용
2026. 9. 9.(수) ~ 10. 9.(금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6. 9월 중	평가 실시(발표 또는 서면)
2026. 10월 중	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
2026. 10월 중	협약 체결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II.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2026. 9. 9.(수요일) ~ 10. 9.(금요일) 18:00까지
접수 기간	2026. 9. 9.(수요일) ~ 10. 9.(금요일) 18:00까지 *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(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)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▶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

* **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**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[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](#))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- ▶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*를 통한 **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**이 있으니,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〈참고〉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
[별첨]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, ③ NRI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의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**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,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

-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2 (주)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**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** 또한 '**IRIS 회원가입**' 및 '**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**' 필수.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,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

※ **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**

- 1) 매뉴얼 : [별첨]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 - 2) 과제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'00대학교 산학협력단'이 아닌, "00대학교"로 신청요망
 - 3)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-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,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- 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어, 접수마감까지 <00대학교>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◆ **관련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**

□ 신청자격

- (신청자격) 우주청 산하 출연연(항우연, 천문연), 우주항공 관련 대학, 기업

< 신청자격 세부내용 >

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	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
대학(원)	「고등교육법」, 「특별법」(과학기술원법 등)에 따라 대학(원) 중 우주항공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
기업	우주항공 관련 제조, 생산,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※ 사업 지원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예시 :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)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- (활용대상)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 내 정규직 미소속인 우주항공분야 '해외우수과학자'로 국적·연령·전공 무관
-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②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(단, 국내에서 연구중으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해외박사는 신청대상에 포함됨)
- ※ (불가 대상) 공고일 기준, 국내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(단,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),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, 기타 및 유의 사항에 저촉되는 자(RFP 참조)
- ※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. 단,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(상세사항 문의 필요 ☎ 055) 856-4238 / kasarnd@korea.kr)

○ (참여제한)
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단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59조 제1항

- 공고일 기준, 국내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(단,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),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, 기타에 저촉되는 자(☞RFP 기타 참고)
- (과제기획 참여자)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
- (제출서류) 연구개발계획서, 기타증빙 각 1부

<제출서류 목록>

구분		항목명
연구개발 계획서	필수제출 서류	연구개발계획서
		첨부1.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*
		첨부2.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(CV 등)
	선택제출 서류	첨부3. [협약용] 안전관리 계획 등
		첨부4. [협약용]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·보완 대비표
		첨부5. [협약용, 해당 시]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
기타증빙	필수제출 서류	1.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
		2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/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		3. 사전점검 체크리스트(신청기관에 한해 별도제공)
	선택제출 서류	4. (해당 시)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※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
		5. (해당 시)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
		6. (해당 시) 지자체 지원확약서
		7. (해당 시)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서, 사업등록증 등 ※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
해외우수 과학자 관련 제출자료	필수제출 서류	1. (접수 시)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
		2. (협약체결 시) 고용계약서 ※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. 단,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(상세사항 문의 필요 ☎ 055) 856-4238 / kasarnd@korea.kr)
		3. (협약체결 후) 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(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매월 게재)

□ 선정평가

① 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해외우수과학자 기관별 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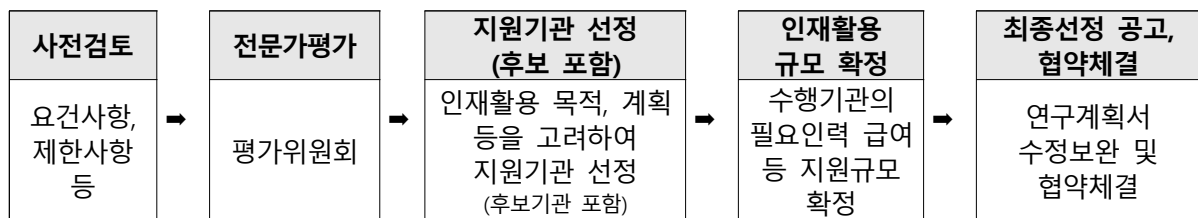
- 발주기관(우주청)은 제출된 해외인재 활용신청서를 종합 검토하는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(수혜기관)을 선정

- 적정 규모의 인건비 및 지원기간 산정을 위해 사업 지원기관에서는 채용인력의 예상 인건비 범주(최소~최대) 및 지원기간을 작성하여 지원 시 제출
※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(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)의 70% 이상이어야 함
 -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 내 정규직 미소속인 우주항공분야 ‘해외우수과학자’대상(☞ 5p 활용대상 참고)
 - 지원기관에서는 지원자의 계약 요건에 따라 **최대 30개월*까지** 사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18개월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2개월 연장 가능
- * (지원기간) 과제당(인원당) 최대 30개월⁽¹⁾18개월+⁽²⁾12개월
- 1) '26년도 실근무 개시일~'27년(실근무 개시일은 '26.7월 가정 시 18개월)
- 2) 단계평가 후 '28년 연장지원
- ※ 30개월 지원을 받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연장을 원할 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

② 우주항공청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한 적정 지원 예산금액 책정

- (인재활용위원회) 내·외부전문위원 2~5인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활용 인재의 이전 직장 연봉액, 연구개발(사업관리)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금액 규모를 책정
-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(Salary slip) 및 희망연봉, 시장 적정연봉 등을 고려하여(Terms&Condition, 고용계약서, 오퍼레터 등) 적정 지원액 책정에 참고

③ 평가 절차 및 평가 지표



- (사전검토)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, 과제와의 유사·중복성 등 검토
- (전문가 평가)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

※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(필요시)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

④ 선정평가 항목

< 본과제 선정평가 항목(안) >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	·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·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정부지원 필요성	20
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	· 해당기관의 해외인력의 우수성 · 해외기관의 해외인재 유치 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 (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)	20
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	· 해외과학자 활용계획 (목표·연구내용·사업관리 등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포함) · 해당기관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성과관리 방안 (기대효과 포함)	30
지원항목 및 기대효과	· 해당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항목 및 계획의 구체성 ·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의 부수적 기대효과 (국내정착, 국제네트워크 지속, 공동연구 등)	30
합계		100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:
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(30점) →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(30점) → 해외인력 우수성
및 유치 적합성(20점) →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(20점)

Ⅲ. 연구개발비 지급

□ 사업공고 및 산·학·연의 과제 지원

- 발주기관(우주청)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등에 60일 이상 공고 실시
 - 사업공고에는 지원내용, 예산, 프로세스, 해외인재 자격 등을 수록
-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(또는 사업관리 프로젝트 등)를 수행할 ‘해외인재 활용 신청서’를 국내 우주항공 산학연이 수립·신청
 - 연구개발계획서 내 해외인재 활용 신청서에는 △해당 해외우수과학자의 프로필, 채용기간 △해외우수과학자가 참여할 R&D 또는 사업관리에 대한 개요, △ 해외우수과학자의 직책, 역할 △해당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비용(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, 항공료, 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 등) 등을 작성

- 향후 과제수행에 따른 자체 기관의 성과평가 방안을 함께 제출
 - 학·연의 성과평가 방안에는 논문 또는 특허 출원 계획을, 기업의 성과평가 방안에는 사업관리계획·목표 등을 포함 권장(논문, 특허 등 가능)

□ 예산 지원

- (사업비 교부) 과제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교부
- 예산 지원 시점은 기업과 해외과학자의 고용계약서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협약 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제출
- 표준계약서에 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, 항공료, 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 등 구체적인 비목별 지원금액과 연구기간 등 활용 계약 조건을 적시하고 향후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를 포함함
- 해외인재 활용계획, 활용방안 및 인재활용위원회의 해외우수과학자별 적정 지원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개인별 지원금액 크기가 다름

< 비용 지원 항목 및 분류 >

총연구비			
직접비			간접비
인건비 (수정직접비의 70% 이상)	연구활동비	그 외 비목	
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	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해외연구자활용지원비(연구생활장려금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	인재유치 비용 (유치설명회 부스비용 등)	수정직접비*의 5% 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

* 수정직접비 : 직접비 - 현물 - 위탁연구개발비 - 국제공동연구개발비 - 연구개발부담비

※ 지급예시: 정착지원,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매달 인건비 외 지급하는 '성과 인센티브'는 '인건비-연구생활장려금'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

※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(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)의 70% 이상이어야 함

- (비목별 세부 지원 기준)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책정
 - 인건비: 수정직접비의 70% 이상 집행 권장

* 해외우수과학자 원소속기관 연봉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이고, 매월 균등(월정액) 지급하며 변칙적으로 운영 불가함

- ※ 해외과학자의 **최근 1년간 급여증빙**(개인·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별 급여 명세서, 급여확인서 등)은 원 소속기관의 직인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하고, 4대 보험(개인, 기관부담금), 원천세,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
- ※ 제출한 원소속기관의 월 급여 × 당해 연구기간(연구 개월 수) = 당해 연도 급여액
- ※ 수정직접비: 직접비 - 현물 - 위탁연구개발비 - 국제공동연구개발비 - 연구개발부담비
- ※ **(인건비계상률 하한선 적용)**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정 직접비의 70%이상은 해외 우수과학자의 인건비 사용 필수

- 연구활동비 등: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가 수정직접비의 70% 이상을 만족하고, 협약한 총 사업비 범위 내 실비정산액 기준 일정 비율 보전 예정

- ※ 세부 비목별 한도 초과 금액은 자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지원 가능함
- ※ 중도 종료 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, 최소 수행기간(12개월)에 미달된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및 이주비를 반납할 수 있음
- ※ 직계가족(자녀)의 자녀학비(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¹⁾비, 어린이집(누리과정) 보육비, 초·중·고등 과정의 교육비(방과후 교육비 포함) 등)
- ※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(예: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)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게재해야 함

1) 교육청에서 인·허가를 득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인허가여부는 유치원알리미(<https://e-childschoolinfo.moe.go.kr/main.do>)에서 조회

- 간접비: 수정직접비의 5%

○ (매칭비율)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국비와의 매칭비율 산정

- ※ 혁신법에 의거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최소 5:5 매칭 필수

<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>

제19조(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(이하 "기관부담연구개발비"라 한다)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
2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

(1)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함

구분	지원 비율
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중소기업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
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중견기업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
다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대기업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

※ (예시) 중견기업은 최소 30%, 대기업은 최소 50%를 부담해야 함

(2)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함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

구분	현금부담 비율
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중소기업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
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	
다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(중견기업)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
라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- 대기업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

(3)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는 각 호와 같음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
- 연구시설·장비비
-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
- 소프트웨어 활용비

(4)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

(5) 민간참여 수행비율 및 자부담 산정 예시

< 예시: 대기업이 총 8.5억 원 규모의 인간비를 포함한 총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>

-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없을 시 해당 대기업은 8.5억의 50%인 4.25억 원 이상의 자부담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, 이 중 15% 이상 (약 0.64억 원)은 반드시 현금 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함

IV. 사업관리

□ 연구 기간

사업공고 (‘26.9~’26.10)	선정평가 (‘26.10)	인재활용 규모 확정 (‘26.10)	수행관리 (‘26.10.~’26.12.)	성과관리
‘26년 신규과제 사업 공고	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확정 (후보군까지 선정)	수행기관의 필요인력의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	협약 및 사업비 지급	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
우주항공청 (IRIS, 30일 이상)	1개월	1개월	약 3개월	차년도

※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음

※ 해외 우수과학자 비자 발급, 입국 후 국내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등 사전 준비 필요

□ 성과관리 방안

- 청·기관·해외우수과학자 간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 성과 관리 계획 구축 및 관리 예정(종료연도)
- 사업공고 당시 제출했던 자체 기관의 성과평가 방안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반영

< 성과지표 비중 및 구분(안) >

항 목		비중
정성 (60)	자체 성과평가 보고서 (사업지원시 제출했던 성과평가 방안으로 논문/특허 여부)	60
정량 (40)	사업 최종평가보고서의 제출여부 및 완성도	20
	사업수혜자의 근속여부	10
	해외대학·기관·기업으로의 파견 등의 교류 기여실적	10
합계		100

□ 사업추진 프로세스

구분	주요내용	주체	추진 시기
계획수립	사업계획 수립·홍보 ▶ 목표, 추진방향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▶ 해외설명회 및 국내기업 대상 사업홍보	우주항공청	~'26.1월
	사업공고 ▶ 사업 공고 추진 - 우주항공청 누리집 및 IRIS 공고	우주항공청	3~5월
선정평가	계획서 접수 ▶ 신청서 접수 - 연구재단 시스템(IRIS 등)을 통해 접수	신청기관 ⇒ 우주항공청	5월
	선정평가(지원대상) ▶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 ▶ 지원기관 대상 선정(후보군 발굴)	우주항공청	5~6월
	지원규모 확정 ▶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한 지원규모 결정	우주항공청	6월
수행관리	협약체결 ▶ 지원기관 협약체결	우주항공청 ⇄ 주관기관	6월
	사업비 지급 ▶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급 - 일괄 또는 분할 지급	우주항공청 ⇒ 주관기관	7월
	수행관리 ▶ 협약변경, 중간검점 등	주관기관	수시
	점검/평가 ▶ 연차별 보고서 제출 후 평가	우주항공청	12월말 (차년도 1월)
사후관리 및 성과관리	사업비 정산 ▶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- 연차별 정산 (집행잔액 반납 및 불인정 금액 반납)	주관기관 ⇒ 우주항공청	차년도 3월
	성과관리 ▶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 후 과제 신청 기한 동안의 성과제출	주관기관 ⇒ 우주항공청	차년도 1월말

※ 추진 시기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□ 해외 우수과학자 관리

- 국내 상주기간은 근무일(고용계약서 발표시점 기준)의 70% 이상이어야 함
 - ※ 중도 종료 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, 최소 수행기간(12개월)에 미달된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및 이주비를 반납할 수 있음
- 해외 우수과학자의 휴가, 출장 등 근태관리 세부사항은 연구기관 규정 및 근로계약 체결에서 정한 바에 따름
 - ※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(예: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)를 IRIS에 게재해야 함

□ 기타 및 유의 사항

- 혁신법 및 운영 매뉴얼에 의거 사업관리 예정
 - 본 공고, 사업,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「과학기술 기본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행정규칙 「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등을 적용함
- (3책5공 제외) 본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*에 따라 3책5공 대상에서 제외함
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제2항

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<중략>

- 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 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,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
-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(예: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)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게재해야 함
- 신청기관·선정기관 등에는 별도 안내 및 자료 배포 예정
-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병기 필수
 - 본 연구는 우주항공청의 「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사업」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(연구과제번호)
-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 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

<참고>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

※ 위탁정산수수료 = 표준수수료 + 가산금

(단위 : 천원)

연구비 규모 * 당해연도 정부출연금	표준수수료(부가세 포함) '26.1.1.~'26.12.31.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	비고	
1억원 미만	987	* (가산금)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-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	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185	○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	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515	공동연구 기관수	가산금
		0개	없음
		1개	표준수수료의 10%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1,647	2개 이상	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1,845	○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	
		연구 개발기간	가산금
		1년 이하	없음
30억원 이상	2,043	1년 초과	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

- 본 사업(과제)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및 관리함
- (문의처) (과제제안요구서) ☎ 055-856-4238 / kamji222@korea.kr
(과제접수/평가/절차) ☎ 055-856-5017 / smiley52@korea.kr